# 캐롯 제품안심케어보험 약관

## 캐롯 제품안심케어보험 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 3
주요내용 요약서 ····· 4
보험용어 해설 ····· 6
신용정보 제공 ·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7

캐롯 제품안심케어보험 보통약관 ····· 10
Ⅰ. 공통조항 ····· 10
제1조(목적) ····· 10
제2조(용어의 정의) ····· 10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11
제4조(보험금의 청구) ····· 11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11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12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12
제8조(손해방지의무) ····· 13
제9조(현물보상) ····· 13
제10조(잔존물) ····· 13
제11조(대위권) ····· 13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 14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 14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 14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 14
제16조(청약의 철회) ····· 14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5
제18조(계약의 무효) ····· 16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16
제20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 16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 16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17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17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17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18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18
제27조(계약의 해지) ····· 19
제2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19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20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20

제30조(보험료의 환급) ····· 20
제31조(분쟁의 조정) ····· 21
제32조(관할법원) ····· 21
제33조(소멸시효) ····· 21
제34조(약관의 해석) ····· 21
제3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21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22
제37조(개인정보보호) ····· 22
제38조(준거법) ····· 22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22

Ⅱ. 보장조항
1. 손상케어보장 ····· 23
2. 제품케어보장 ····· 25

캐롯 제품안심케어보험 특별약관 ····· 27
배터리성능보장교체비용 특별약관 ····· 27
중고품 확장보장(손상케어보장) 특별약관 ····· 28
중고품 확장보장(제품케어보장) 특별약관 ····· 29
특정제품 한정보장 특별약관 ····· 29
특정제품 부보장 특별약관 ····· 29
단체계약 특별약관 ····· 3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 31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 32
보험료 수정 조항 ····· 33
공동인수 특별약관 ····· 33
전자서명 특별약관 ····· 3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34
CYBER LOSS ABSOLUTE EXCLUSION CLAUSE (IUA-09-081) ····· 37
감염병 면책 조항 [LMA5399] ····· 38
TERRITORIAL EXCLUSION ENDORSEMENT (BELARUS RUSSIA UKRAINE) ····· 39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 41
전자서명법 ····· 4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41
상법 ····· 42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알릴의무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재산손해・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4.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8.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가)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등을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이전한 경우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보험용어 해설

| | | | |
|---|---|---|---|
| **보험약관** | |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 **보험증권** | |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 | **보험계약자** |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 **보험계약 관계자**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 |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 |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 | **재산손해·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 |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 **보험료** | |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 | **보험목적**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
| | | **보험가액** | 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
| **보험가입금액** | | |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 | **보험금**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 |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환급보험료** | | |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 **보험기간** | | |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
| **보장개시일** | |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 **보험계약일** | |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 신용정보 제공 ·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되며, 고객은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통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66-0300
- 홈페이지 : www.carrotins.com
- 서면접수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나) 본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홈페이지(www.carrotins.com) 하단의 ['소비자포털' 탭 → '고객의 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으로 계약 조회 후 이하 내용 조회 가능
- 본인정보의 이용 시
  이용주체 / 이용목적 / 이용날짜 / 이용항목 /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본인정보의 제공 시
  제공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 제공날짜 / 제공항목 /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단, 내부 경영 관리 목적 및 반복적 업무 위탁을 위한 이용·제공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본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조회 후 정기통지를 신청하시면, 연 1회 정기적인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66-0300
- Email 접수 : customer@carrotins.com
- 서면접수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다) 금융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의무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신용등급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66-0300
- 홈페이지 : www.carrotins.com
- 서면접수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의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합니다)

마)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66-0300
- 홈페이지 : www.carrotins.com
- 서면접수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바) 본인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 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본인정보의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에 본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본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 삭제요구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삭제로 인하여 자료열람 등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66-0300
- 홈페이지 : www.carrotins.com
- 서면접수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사)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 02-2122-4000 (www.nice.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 : 1577-1006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www.koreacb.com)

**3.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

캐롯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당사 개인신용정보<br>관리/보호인 | 손해보험협회<br>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금융감독원<br>금융민원센터 |
|---|---|---|---|
| 전화 | 02-6226-0203 | 02-3702-8500 | (국번없이)1332 |
|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100<br>파인에비뉴 B동<br>캐롯손해보험 준법감시인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br>케이트윈타워 B동 15, 16층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캐롯 제품안심케어보험 보통약관

## Ⅰ. 공통조항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바. 고유의 결함: 제조사의 최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태생적인 결함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품질보증기간: 보험의 목적을 제조한 제조사가 고유의 품질보증정책에 따라 고장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Ⅱ. 보장조항 1. 손상케어보장 및 2. 제품케어보장 상 보장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 또는 협력사에서 작성한 수리비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기 간 | 지 급 이 자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총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③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장제품의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실구매 가격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단, Ⅱ. 보장조항 1. 손상케어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제5항 및 2. 제품케어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제6항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손해발생시점의 시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발생 시점의 시가】**
아래 중 낮은 금액을 말합니다.
1. 신품 취득금액에서 사용한 기간에 대한 감가액을 공제한 금액
2. 동종/동형/비슷한 상태의 중고제품의 사고발생시점 시중 판매가격

④ 패키지나 세트의 일부분인 제품에 대한 손상의 경우 역시 하나의 사고로 취급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⑤ 사고가 난 제품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한도 또는 감가된 구매가격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⑥ 모든 손해를 합한 금액에 대한 회사의 총보상한도액은 증권상에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동일한 보험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상법」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상법」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9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잔존물)**

회사가 Ⅱ. 보장조항 1. 손상케어보장 및 2. 제품케어보장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

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Ⅱ. 보장조항 1. 손상케어보장 및 2. 제품케어보장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보험업감독규정」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합니다)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7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

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 구분 | 내용 |
|---|---|
| Ⅱ. 보장조항<br>1. 손상케어보장 | 경과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 Ⅱ. 보장조항<br>2. 제품케어보장 | 품질보증기간 종료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아래와 같이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Ⅱ. 보장조항<br>1. 손상케어보장 | 이미 경과한 보험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 Ⅱ. 보장조항<br>2. 제품케어보장 | 품질보증기간 종료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구일】**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일'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해지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 봅니다.

##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1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회사에 있는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Ⅱ. 보장조항

### < 1. 손상케어보장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서비스기간 중 계약자가 지정한 판매채널에서 구매한 보장제품이 보험기간 중(구매한 직후부터 보장기간까지를 말합니다) 사고손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손상보증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시리얼번호 (　　)
○ 특정서비스 (　　)
○ 판매채널 (　　)
○ 보장제품 (　　)
○ 보장 기간 (　　)

② 제1항의 보장제품이 선물로 타인에게 제공된 경우에도 해당 보장제품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사고손상'은 고의로 인하지 않은 급격하고 우연하며 가시적인 외래의 물리적 손상을 말합니다.

④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그리고 수리를 위하여 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 배송비를 포함합니다.

⑤ 회사는 자체 판단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고장난 제품의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시가에 상응하는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의 시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패키지나 세트를 구성하는 일부분인 보장제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비용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제품이 독자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회사는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손해발생 시점의 시가】**
아래 중 낮은 금액을 말합니다.
1. 신품 취득금액에서 사용한 기간에 대한 감가액을 공제한 금액
2. 동종/동형/비슷한 상태의 중고제품의 사고발생시점 시중 판매가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6.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점진적인 기능저하,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예: 배터리, 브러쉬, 필터, 고무패킹 등)

7.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비용(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
8. 사용자의 임의 개조 및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9. 중고품 또는 골동품, 수집품, 재활용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반품
10.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물품
11. 토지, 건물(주거용 주택 및 아파트도 포함), 부동산
12. 여행자수표, 현찰, 모든 형태의 티켓, 유가증권, 금은 통화, 희귀하거나 고가인 동전이나 우표, 식물, 동물, 음식, 소모성, 소멸성 제품, 변질되는 제품, 서비스
13. 각종 형태의 전문적인 서비스(예: 노동 또는 보수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재산의 수리 및 설치, 도움 및 지원 라인에서 보증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14. 제품 고유의 결함 및 설계상의 결함이나 법적 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1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6. 제품이 가진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17. 제품을 수리 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
18. 계약자, 제3자 또는 일반적인 운수업체(항공사,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 등)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동안 분실, 도난, 손상 또는 잘못 배달된 경우
19.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20. 동력장치(모터/엔진)가 부착된 차량, 오토바이, 보트 등 모든 운송, 이동 수단
21. 보장제품의 공식 수리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리한 경우. 공식 수리업체가 없는 보장제품을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허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22.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소모성/소멸성 제품】**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일정기간 사용 후 기능을 상실하여 못 쓰게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사용가능 횟수가 있거나, 1년 미만의 평균이나 권장되는 사용수명 또는 시간 등이 있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 2. 제품케어보장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서비스기간 중 계약자가 지정한 판매채널에서 구매한 보장제품이 보험기간 중(제조사 보증기간 만료일부터의 추가연장기간 동안을 말합니다)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고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수리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보장제품의 보상기간은 무상보증수리기간을 포함하여 최대연장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시리얼번호 (  )
○ 특정서비스 (  )
○ 판매채널 (  )
○ 보장제품 (  )
○ 추가연장기간 (  )
○ 최대연장기간 (  )

② 제1항의 보장제품이 선물로 타인에게 제공된 경우에도 해당 보장제품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고장이란 보장제품의 제조사가, 제조사의 무상수리 기간 중, 무상 수리를 보증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보증수리기간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⑤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그리고 수리를 위하여 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 배송비를 포함합니다.

⑥ 회사는 자체 판단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고장난 제품의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시가에 상응하는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의 시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발생 시점의 시가】**
아래 중 낮은 금액을 말합니다.
1. 신품 취득금액에서 사용한 기간에 대한 감가액을 공제한 금액
2. 동종/동형/비슷한 상태의 중고제품의 사고발생시점 시중 판매가격

⑦ 패키지나 세트를 구성하는 일부분인 제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비용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제품이 독자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⑧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보증수리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6.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점진적인 기능저하,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예: 배터리, 브러쉬, 필터, 고무패킹 등)

7.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비용(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
8. 사용자의 임의 개조 및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9. 중고품 또는 골동품, 수집품, 재활용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반품
10.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물품
11. 토지, 건물(주거용 주택 및 아파트도 포함), 부동산
12. 여행자수표, 현찰, 모든 형태의 티켓, 유가증권, 금은 통화, 희귀하거나 고가인 동전이나 우표, 식물, 동물, 음식, 소모성, 소멸성 제품, 변질되는 제품, 서비스
13. 각종 형태의 전문적인 서비스(예: 노동 또는 보수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재산의 수리 및 설치, 도움 및 지원 라인에서 보증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14. 제품 고유의 결함 및 설계상의 결함이나 법적 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1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6. 제품이 가진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17. 제품을 수리 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
18. 계약자, 제3자 또는 일반적인 운수업체(항공사,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 등)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동안 분실, 도난, 손상 또는 잘못 배달된 경우
19.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20. 동력장치(모터/엔진)가 부착된 차량, 오토바이, 보트 등 모든 운송, 이동 수단
21. 보장제품의 공식 수리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리한 경우. 공식 수리업체가 없는 보장제품을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허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22. 구매한 제품의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보증수리기간이 1년 미만인 제품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소모성/소멸성 제품】**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일정기간 사용 후 기능을 상실하여 못 쓰게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사용가능 횟수가 있거나, 1년 미만의 평균이나 권장되는 사용수명 또는 시간 등이 있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 캐롯 제품안심케어보험 특별약관

### 배터리성능보장교체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 또는 협력사에서 확인한 배터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피보험기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배터리 교체비용"이란 기존의 배터리와 동일한 배터리를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보상기준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③ 제1항의 "배터리의 기능저하"란 배터리 최대 성능 대비 ( )%이하(또는 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피보험기기】**
태블릿, 스마트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대리인 포함합니다)의 고의로 생긴 손해로 인한 비용
2. 피보험기기 제작사의 보증프로그램이나 각종 수리보장프로그램(리콜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
3. 피보험기기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지진, 분화, 태풍, 사이클론, 토네이도,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8. 컴퓨터 바이러스나, 유해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컴퓨터 명령으로 피보험기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피보험기기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파괴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9.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재물의 압류, 몰수 또는 파괴로 인한 손해
10. 사용중지로 인한 수익의 상실 등 모든 종류의 간접 손실
11. 지연(보험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함), 사용손실,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손실, 시장가치의 하락 또는 기타 간접손실(시간손실, 이익상실, 피보험기기의 수리 또는 대체의 지연 또는 이로 인한 불편들을 포함합니다)
12. 배터리 전원이나 기타 인위적인 전류에 의한 기계적 손해 또는 장해
13. 프로그래밍, 청소, 조정, 수리 변경, 앱다운로드에 따른 오류 등 피보험기기에 행해진 기타 작업
14. 회사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피보험기기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외관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관의 파손은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및 색상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15. 부정행위, 속임수 또는 사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기기를 위탁받은 자에 의한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16.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USIM이 장착된 상태 또는 타인 명의의 eSIM이 다운로드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17. 수리명세서상 배터리 교체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8. 제품을 수리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이나 택배・운송비용
19. 제3자 또는 운송업체(항공사, 철도,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0. 보험증권에 유예기간(보험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해
21. 파손사고에 대하여 회사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무허가 수리업체 등에서 수리한 경우
22. 피보험자가 발송된 피보험기기의 수령을 지체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23. 목적물의 설치, 제거, 폐기 또는 가입하지 않는 기기의 설치, 제거, 수리, 관리(액세서리, 부속물 또는 다른 기기 포함) 또는 목적물 외부의 네트워크 또는 이동통신망
24. 사고, 남용, 태만, 오용(공인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자에 의한 오설치, 수리, 관리 포함), 공인되지 않은 조작, 극한의 환경(극한의 기온 또는 습도 포함), 극한의 물리적, 전기적 스트레스 또는 전파방해, 전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파동, 번개, 정전기, 화재, 자연재해 또는 그밖의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
25. 변경, 훼손, 제거된 일련번호를 가진 목적물
26. 네트워크 또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기능, 바이러스 또는 보장제품에 도입된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한 문제들
27. 분실 또는 도난
28. 피보험기기의 예방보전
29 제품 리콜을 야기한 기계적인 결함
30. 제품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이 아닌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게끔 설계된 보호막
31. 충전기, 어댑터, USB케이블 등 배터리 본체를 제외한 부속품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중고품 확장보장(손상케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Ⅱ. 보장조항의 1. 손상케어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에도 불구하고 중고품에 대한 손해는 Ⅱ. 보장조항의 1. 손상케어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중고품 확장보장(제품케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Ⅱ. 보장조항의 2. 제품케어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에도 불구하고 중고품에 대한 손해는 Ⅱ. 보장조항의 2. 제품케어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특정제품 한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제품의 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Ⅱ. 보장조항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보험증권 및 약관의 보장제품은 아래에 명기된 제품만을 의미합니다. 명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당 보장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품
(1) 손상케어보장 ( )
(2) 제품케어보장 (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특정제품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제품의 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Ⅱ. 보장조항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보험증권 및 약관의 보장제품에서 아래에 명기된 제품을 제외합니다. 명기된 제품에 대한 해당 보장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보장제품
(1) 손상케어보장 ( )
(2) 제품케어보장 (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의3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보험기간 종료 후도 포함합니다)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에 피보험자의 명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날)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 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①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②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린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의 설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 수정 조항

**제1조(보험료의 수정)**
매 ( )개월마다 보험시기부터 누적된 총보험료 기준으로, 손해율이 ( )%를 넘을 경우, 보험사는 신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 손해율 = (지급보험금 누계액 + 해당월말 기준 미지급 보험금) / 납입보험료 누계액
- 지급보험금 : 손해조사비 포함
- 납입보험료 누계액 : 해당월말까지 발생된 납입예정보험료 포함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캐롯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 또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 회 사 명 | 인수비율(금액) |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Ⅰ.공통조항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 |
|---|---|
|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br>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br>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br>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 |

| | |
|---|---|
| | 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br><br>**<「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br>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br>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1. 생명보험<br>2. 상해보험<br>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br>4.「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br>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br>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br>**<「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br>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 |
|---|---|
|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br>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br>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br>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br><br>**<「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br>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설명 |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br>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br>⇒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br><br>**<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br>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br>⇒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br><br>**<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br>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 | |
|---|---|
| |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 |
|---|---|
| 설명 | 2024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4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24년 1월 15일~ 2024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24년6월1일~2024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4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
| 설명 | 2024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4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24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

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소득세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소득세법」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 CYBER LOSS ABSOLUTE EXCLUSION CLAUSE (IUA-09-081)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contract, this contract excludes any Cyber Loss.
2. Cyber Loss means any loss, damage, liability, expense, fines or penalties or any other amount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2.1. the use or operation of any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2.2. the reduction in or loss of ability to use or operate any Computer System, Computer Network or Data;

2.3. access to, processing, transmission, storage or use of any Data;

2.4. inability to access, process, transmit, store or use any Data;

2.5. any threat of or any hoax relating to 2.1 to 2.4 above;

2.6. any error or omission or accident in respect of any Computer System, Computer Network or Data.

3. Computer System means any computer, hardware, software, application, process, code, programme, 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s system or electronic device owned or operated by the Insured or any other party. This includes any similar system and any associated input, output or data storage device or system, networking equipment or back up facility.
4. Computer Network means a group of Computer Systems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or network facilities connected via a form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including the internet, intranet and virtual private networks (VPN), allowing the networked computing devices to exchange Data.
5. Data means information used, accessed, processed, transmitted or stored by a Computer System.
6. When this clause forms part of a reinsurance contract, Insured shall be amended to read Original Insured.

IUA 09-081 17.05.2019

[번역문]

사이버 위험 완전 면책 조항 (IUA-09-081)

1. 이 계약에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사이버 손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사이버 손해란 아래의 원인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 손해, 배상책임, 비용, 벌과금 또는 기타 금액을 의미합니다.
    2.1.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운영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해
    2.2.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의 운영 또는 사용능력에 대한 손실 또는 감소
    2.3. 데이터 사용 또는 저장, 송신, 처리, 접속
    2.4. 데이터 사용, 저장, 송신, 처리, 접속에 대한 장애
    2.5. 위 2.1~2.4번의 사유와 관련된 사기 또는 위협
    2.6.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와 관련된 오류, 누락 또는 사고
3. 컴퓨터 시스템이란 피보험자 또는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처리, 코드, 프로그램, 정보 기술, 통신 기술 또는 전자적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사 시스템 및 연관성 있는 입/출력, 데이터 저장기기 또는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또는 백업 저장소를 포함합니다.
4. 컴퓨터 네트워크란 인터넷, 인트라넷, 가상사설망(VPN)을 포함한 통신기술의 형태를 통해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과 그 외 전자적 장비 또는 네트워크 장비들의 조직 체계를 의미하며, 네트워크 내 장치들 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5.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사용, 접속, 처리, 전송 및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6. 본 특약이 재보험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 본 특약 내 '피보험자'는 원계약 피보험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IUA 09-081 17.05.2019

## 감염병 면책 조항 [LMA5399]

1. 본 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피보험자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 **TERRITORIAL EXCLUSION ENDORSEMENT** (BELARUS RUSSIA UKRAINE)

This endorsement modifies insurance provided by the Policy: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Policy or any endorsement thereto, including the Coverage Territory, Policy Territory, Territorial Limits or other similar provision, the following are excluded territories under this Policy:

* The Republic of Belarus:
* The Russian Federation a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or their territories, including territorial waters, or protectorates where they have legal control: legal control shall mean where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 Ukraine (in accordance with the borders established as of the 1991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cluding the Crimean Peninsula and the Donetsk and Luhansk regions);

T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the "Excluded Territories".

Regardless of: (1) any location shown on this Policy, on the Statement of Locations or Values, or otherwise stated, (2) any newly acquired location or miscellaneous unnamed location, (3) any error or omission by any entity, (4) any coverage extension or additional coverage, (5) any definition that may contain one or more of the Excluded Territories, or (6) any change in sanction status, there shall be no coverage provided in any of the Excluded Territories, nor any coverage provided as a result of an event that occurs in any of the Excluded Territories.

The inclusion of one or more of the Excluded Territories in any other provision of this Policy does not provide coverage for such geographic area.

Where there is any conflict between the terms of this endorsement and the terms of the Policy, the terms of this endorsement shall apply, subject at all times to the application of any Sanctions clause.

[번역문]

담보지역 면책 특별약관
(벨라루스 - 러시아 - 우크라이나)

본 특약은 보험 증권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조항을 수정합니다.
담보 지역, 보험증권 담보 영역, 영역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여 본 증권 및 타 특약에 이와 반대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다음은 이 특약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 벨라루스 공화국:
* 유엔에서 인정한 러시아연방(또는 영해를 포함한 러시아연방의 영토 또는 법적 통제가 있는 보호령: 법적 통제는 유엔이 인정한 곳을 의미함)
* 우크라이나(크리미아 반도,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을 포함하여 1991년 독립 선언에 따라 설정된 국경에 따름), 이하 "제외 지역"으로 통칭합니다.
"(1) 본 증권에서 보여지거나, 명기된 또는 가입금액, 기타 명세에 포함되는 지역 (2) 신규 취득한 지역 또는 다양한 명기되지 않은 지역, (3) 개별적인 오류 또는 누락, (4) 모든 확장담보 또는 추가 담보, (5) 하나 이상의 제외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정의, 또는 (6) 제재 상태의 변경" 에도 불구하고 면책대상(제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인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다른 조항에 하나 이상의 제외 지역을 포함한다고 해서 해당 지리적 영역에 대한 보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의 조건과 증권상의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항상 제재 조항의 적용에 따라 본 특약의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조항이 개정 또는 폐지가 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은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